

# 주거밀집지역 관련 가축사육 제한 완화를 위한 활동 동향

## 1. 현황

가.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제한 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나. 주거밀집지역과 관련된 가축사육제한 구역 수준이 '읍면 소재지', '주거 밀집지역 반경 100m' 으로 다소 낮았으나, 환경부가 2011년도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권고안' 을 각 지자체에 시달함에 전국적으로 점차 강화 되고 있는 상황임

### 〈환경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권고안〉

주거밀집지역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의 최소단위 5~10호 이상</li> <li>• 가구간의 거리는 대지경계선 50m 기준</li> </ul>
축종	한우	100m
	젖소	250m
	돼지	500m
	개	500m
	닭, 오리	500m

※ '주거밀집지역' 기준이 5가구 이상 50m 기준으로 설정되어 사실상 축산업 말살행정

다. 환경부의 일방적인 권고안 제시에 따라, 농식품부와 축산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음

○ 환경부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권고안을 시달 하였으나, 연구용역 결과가 과학적으로 분석된 것이 아니라, 거리제한 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를 조사하여 단순 통계낸 것에 불과함

- 이에, 2012년도 축종별 자조금 사업으로 농식품부,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한돈협회, 양계협회, 오리협회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함
- ‘가축사육시설 설치제한 범위 및 조건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 실시 (2012.7/경남과학기술대학교)

〈가축사육시설 설치제한 범위 관련 연구용역 결과〉

- ▶ 한 우
  - 50두 이하 : 50m, 50두~200두 : 70m, 200두 이상 : 100m
- ▶ 젓 소
  - 50두 이하 : 50m, 50두~200두 : 100m, 200두 이상 : 150m
- ▶ 돼 지
  - 2,000두 이하 : 180m, 2,000두~4,000두 : 250m, 4,000두 이상 : 320m
- ▶ 가 금
  - 6만수 이하 : 180m, 6만수~12만수 : 250m, 12만수 이상 : 320m

- 농식품부는 축산업 허가제 관련 위치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화하여, 환경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권고안에 대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임
-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됨(2012.09.07)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 - 위치기준(주거밀집지역)〉

1)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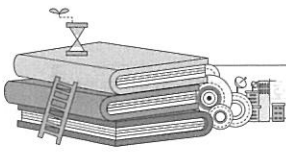
축종 및 규모	한육우			젓소		
	50두 이하	100두 이하	200두 이상	50두 이하	100두 이하	200두 이상
제한거리(m)	50	70	100	50	100	150

2) 돼지, 닭·오리

축종 및 규모	돼지			닭·오리		
	2천두 이하	3천두 이하	3천두 이상	6만수 이하	9만수 이하	9만수 이상
제한거리(m)	180	250	320	180	250	320

2. 문제점

가. 평지농촌, 도시근교 중심의 낙농목장 입지로 인해 많은 낙농가들이 가축



사육제한구역 거리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낙농목장의 입지에 있어서 평지농촌, 도시근교에 약 62%가 분포하고 있어 환경문제에 취약(2011낙농기초조사연구, 한국낙농육우협회)
- 입지별 분포 : 도시근교(11.1%), 평지농촌(50.7%), 중산간지역(28.1%), 산간지역(9.2%), 기타지역(0.9%)

나. FTA 확대를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가 필요하나, 무차별적인 가축사육제한 구역 확대로 인해 축산업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시 신규목장은 물론 기존목장의 신·증축까지 제도적으로 막는 것은 지나친 규제임
- FTA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중인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미집행의 결과를 초래함
- 총 예산액 2,760억원(보조 30% + 용자 50%) 중 1,167억원 미집행

### 3. 대책방안

가. 축종별 적정 축사설치 제한 범위(주거밀집지역과 최소거리)

- 축산단체 연구용역 결과 및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군 조례에 반영
- 소

축종 및 규모	한육우			젖소		
	50두 이하	100두 이하	200두 이상	50두 이하	100두 이하	200두 이상
제한거리(m)	50	70	100	50	100	150

- 돼지, 닭·오리

축종 및 규모	돼지			닭·오리		
	2천두 이하	3천두 이하	3천두 이상	6만수 이하	9만수 이하	9만수 이상
제한거리(m)	180	250	320	180	250	320

나.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기존농가의 신·증축 허용

- 친환경 및 사육환경 개선, 축산업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서는 기존농

가의 신·증축 허용 필요

※ 환경부 관련 지침 지자체 시달(2012.1.25)

- 합법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재개축 허용
-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 등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지자체의 장이 판단한 경우 기존 시설의 20% 이내 에서 증축

